17.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 사용기준중개정

노동부고시제1999-11호 1999. 6. 3.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 고시에서 "근로자"라 함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제7조에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별표 2의 본사사용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 4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인이상을 포함하여 3명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12.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의 제목을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 및 서류비치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3호의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수수료"를 "대가"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별표 4와 같으며, 공사금액이 40억원이상 공사는 규칙 별표 6의2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4회에 1회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를 "별표 4와 같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수료"를 "대가"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을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으로 하고 동표 항목의 1. 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등 사용내역중 "◦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 - 전담안전관리자, -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자, - 공사금액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된 유자격안전관리자"를 "◦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 -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로 하고, 동표 항목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 사용내역중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으로 하고, 동표 항목의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사용내역	사용기준
8. 본사 사용비	·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내에서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 업무수행 출장비	안전관리비총액의 2%

별표 4 제목 및 내용중 "수수료 요율"을 "대가요율"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2조,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날 이후에 신규계약되는 공사 또는 신규착공되는 공사(자기공사자가 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공 사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공 사 금 액	원	공 사 기 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공사진척도에 따른 사용 기준금액	원 (안전관리비×별표3사용기준)

사 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직책 성명 (인)

(뒷면)

항목별사용내역

항 목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 액
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주 :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순서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건설업체명	
소 재 지	
대 표 자	

구 분	전 전 년 도	전 년 도	당 해 년 도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사 용 금 액				
항 목	금 액			
	금월분		당해년도누계	
소 계	사업장	본사	사업장	본사
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등		-		-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안전전담부서 운영비 등	-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책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인)

대표이사 (인)

(뒷면)

항목별사용내역

항 목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 액
1. 안전관리자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진단비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안전전담부서 운영비등			

※ 붙임 : 본사조직규정,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사용영수증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서

공사명	공사기간	총공사비	안전관리비	본사사용분	본사입금일	기타
계						